##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배임·특정경제범죄가

##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횡령·사기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4. 23. 2008고합1298,2009고합32(병합)]



## 【전문】

【피고인】피고인1외5인

【검사】서정식

【변 호 인】 법무법인 춘추 담당 변호사 신태영 외 4인

## 【주문】

1

피고인 1, 피고인 4, 피고인 6을 각 징역 1년 6월에, 피고인 2를 징역 8월에, 피고인 3을 징역 2년에, 피고인 5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.

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170일을 피고인 1에 대한, 69일을 피고인 3에 대한, 3일을 피고인 4에 대한, 1일을 피고인 5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3년간, 피고인 2, 피고인 4, 피고인 6에 대하여는 각 2년간, 피고인 3에 대하여는 4년간, 피고인 5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 1에 대하여는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.

압수된 증 제8 내지 11호, 증 제18, 22, 41호, 증 제43 내지 50호, 증 제57 내지 59호를 피고인 1로부터, 증 제53, 54호를 피고인 2로부터 각 몰수한다.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]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